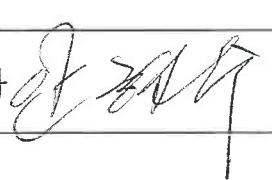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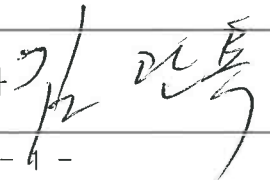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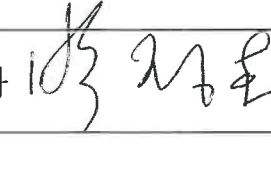


2022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6 인	2 인
참석임원	4 인	0 인

1.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7월 21일)
2. 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본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4인) : 안현수, 김관목, 강성종, 박정호
 - 불참 임원
 - 이사(2인) : 김문수, 김종효
 - 감사(2인) : 오명화, 지후식
4. 심의·의결 안건
 - 1)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 2)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4) 법인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5) 신한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6) 공립민락양지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보고 안건
 - 1) 신한대학교 「직제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의 내용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개회선언]

이사장 안현수 :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이사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차 회의록 보고]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대표 간서명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사무국 국장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 김관목 : 회의록에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자고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은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1호 안건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김준기 :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안현수	김관목	이성호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정호 : 법인의 수익사업을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수익창출을 통하여 법인 책무성을 다하여야 함을 설명
하다. 본 안건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관목 : 동의하다.

이 사 강성중 : 재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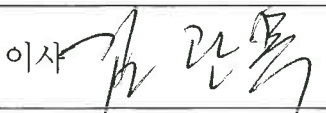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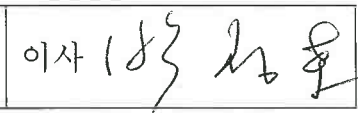
<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비공개 및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하다.

< 제2호 안건 :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2호 안건으로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김준기 : 본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4조의7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관목 :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설명하며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박정호 : 동의하다.

이 사 강성종 : 재청하다.

<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인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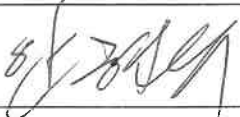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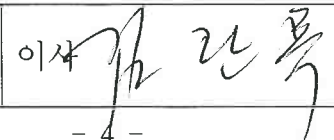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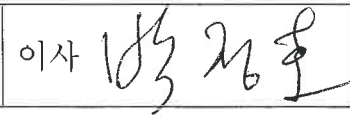
< 제3호 안건 :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3호 안건으로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김준기 : 본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
조의7 및 학교법인 신홍학원 「정관」 제5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와 서기는 각급 학교별
로 구성하되, 대학 교원은 교무팀에서, 직원은 총무팀에서 중등은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안의 위원명단을 소개한다 >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사장 안현수 : 이상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사님
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 사 박정호 : 배부된 자료를 보니 신흥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인징계위원회 위원 선임내용에 동
의하며 이의가 없다고 말한다.

이 사 강성종 : 동의하다.

이 사 김관목 : 재청하다.
< 제3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안건인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
임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제4호 안건 : 법인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4호 안건으로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김준기 :

간서명	이사	안현수	이사	김관목	이사	박정호
-----	----	-----	----	-----	----	-----

니다. 보험가입금액은 41,810,500원이며 보증기간은 2022.5.26.부터 2022.10.31.까지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정호 : 본 안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므로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관목 : 동의하다.

이 사 강성종 : 재청하다.

< 제5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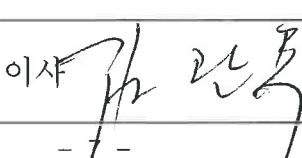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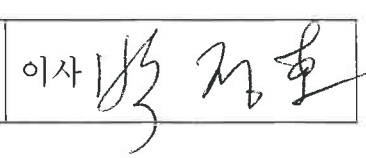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 안건 신한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안건 : 공립민락양지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6호 안건으로 공립민락양지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최승구 평생교육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평생교육원장 최승구 :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우리 대학의 유아교육과 등 아동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기에 공립민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이 2022.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12.1.부터 2027.11.30.까지 5년간
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정호 : 본 안건은 우리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및 평생교육원의 전문 인
력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
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관목 : 동의하다.

이 사 강성종 : 재청하다.

< 제6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 안건 공립민락양지어린이집 재위
탁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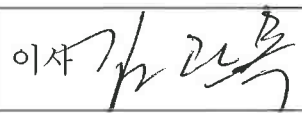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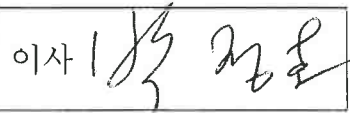
[보고사항]

1. 신한대학교 「직제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폐회선언]

이사장 안현수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저와 김관목 이사님, 그리고 박정호 이사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2022. 7. 29.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안 현 수

이 사 김 관 목

이 사 강 성 중

이 사 김 문 수

이 사 김 중 호

이 사 박 정 호

이 사 이 인 규

감 사 오 명 화

감 사 지 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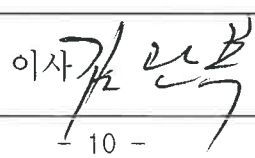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1]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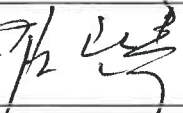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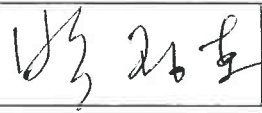
[붙임 2]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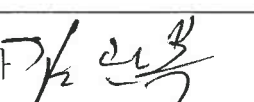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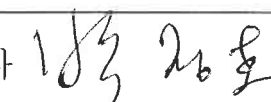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 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 된 날부터 <u>3년</u>이 경과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 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 된 날부터 <u>6년</u>이 경과한 자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이하 "임용"이라 한다)</u>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③ (생략)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u>5인</u>의 위원으로 <u>조직</u>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u>설치 및 구성 등</u>)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u>9명</u>의 위원으로 <u>구성</u>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u>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 3. (현행과 같음) 4. <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u> 5. <u>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u>,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신 설>	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60조(징계의결)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3] 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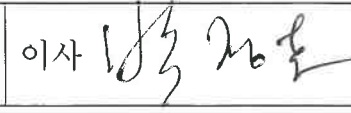
□ 법인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 교원징계위원회(대학)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성명	소속	임기	성명	소속	임기	
1	위원	김효겸	신한대학교	~ 2022.4.25.	김효겸	외부위원	~ 2025.7.28.	남
2	"	이인규	법인임원	~ 2022.4.25.	이인규	외부위원	~ 2025.7.28.	남
3	"	박정호	법인임원	~ 2022.4.25.	박정호	법인임원	~ 2024.7.28.	남
4	"	장인봉	신한대학교	~ 2022.4.25.	장인봉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5	"	하대영	외부위원	~ 2022.4.25.	하대영	외부위원	~ 2025.7.28.	남
6	"				구효진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7	"				임애련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8	"				송정애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9	"				양소라	외부위원	~ 2025.7.28.	여
-	간사	신봉주	신한대학교		신봉주	신한대학교		
-	서기	정윤경	신한대학교		정윤경	신한대학교		

○ 교원징계위원회(중등)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성명	소속	임기	성명	소속	임기	
1	위원	이인규	법인임원	~ 2022.4.25.	이인규	외부위원	~ 2025.7.28.	남
2	"	최명영	중등학교	~ 2022.4.25.	최명영	중등학교	~ 2024.7.28.	남
3	"	권윤희	중등학교	~ 2022.4.25.	권윤희	중등학교	~ 2024.7.28.	남
4	"	이창성	중등학교	~ 2022.4.25.	이창성	중등학교	~ 2024.7.28.	남
5	"	하대영	외부위원	~ 2022.4.25.	하대영	외부위원	~ 2025.7.28.	남
6	"				금은주	신흥고등학교	~ 2024.7.28.	여
7	"				박은희	신흥중학교	~ 2024.7.28.	여
8	"				이춘자	외부위원	~ 2025.7.28.	여
9	"				오은미	외부위원	~ 2025.7.28.	여
-	간사	우동한	중등학교		우동한	중등학교		
-	서기	김태은	중등학교		은종희	중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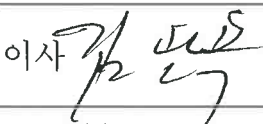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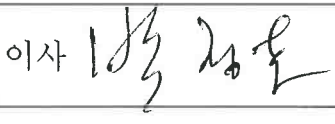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직원징계위원회(대학)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성명	소속	임기	성명	소속	임기	
1	위원	김효경	신한대학교	~ 2022.4.25.	김효경	외부위원	~ 2025.7.28.	남
2	"	이인규	법인임원	~ 2022.4.25.	이인규	외부위원	~ 2025.7.28.	남
3	"	김남중	신한대학교	~ 2022.4.25.	김남중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4	"	김주현	신한대학교	~ 2022.4.25.	김주현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5	"	민철기	신한대학교	~ 2022.4.25.	민철기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6	"				구효진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7	"				임애련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8	"				송정애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9	"				양소라	외부위원	~ 2025.7.28.	여
-	간사	김종록	신한대학교		김종록	신한대학교		
-	서기	김호연	신한대학교		박규리	신한대학교		

○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성명	소속	임기	성명	소속	임기	
1	위원	김종효	법인임원	~ 2022.4.25.	김종효	법인임원	~ 2024.7.28.	남
2	"	이채락	신한대학교	~ 2022.4.25.	이채락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3	"	김준기	신한대학교	~ 2022.4.25.	김준기	신한대학교	~ 2024.7.28.	남
4	"	이병수	외부위원	~ 2022.4.25.	이병수	외부위원	~ 2025.7.28.	남
5	"	김효준	외부위원	~ 2022.4.25.	김효준	외부위원	~ 2025.7.28.	남
6	"				김민정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7	"				양승희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8	"				황경숙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9	"				홍승희	신한대학교	~ 2024.7.28.	여
-	간사	김종록	신한대학교		김종록	신한대학교		
-	서기	김호연	신한대학교		박규리	신한대학교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4] 법인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5] 신한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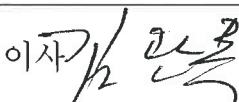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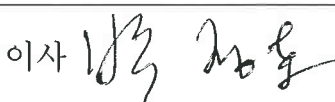
□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 발굴·확산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우리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에너지자원실험실이 선정

가. 주관기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나. 선정내용: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및 안전보호구장비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지원

다. 사업기간: 2022년 5월 ~ 11월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라. 선정연구실: 과학기술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에너지자원실험실(브니엘관 40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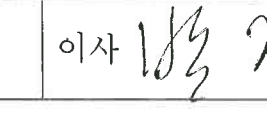
마. 사업선정금액: 41,810,500원(사천일백팔십일만오백원정)

바. 인프라 구축항목

구축항목	소요예산	비고
일반 약품장	436,000원 x 10대	
밀폐환기형 약품장	4,721,500원 x 7대	
휴대용 무선복합가스탐지기	2,200,000원 x 2대	
합계	41,810,500원	

□ 서울보증보험 청약

- 「2022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2항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성실사용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금액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지원기관 ‘국가연구안전본부’에 제출
- 보증보험 청약내역
 - 보험계약자: 신한대학교
 - 피보험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보 험 사: SGI서울보증
 - 보험가입금: 금 41,810,500원(금사천일백팔십일만오백원정)
 - 보증기간: 2022. 5. 26. ~ 2022. 10. 31.(159일간)
 - 보 험 료: 금 27,500원(금이만칠천오백원정, VAT포함)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